

87

공고

구경권결사항
조결
의규
합호정

출판자	차량과 박동장	전화번호	355	종보	필	요	불필요
검사	계장	차량	판장	관공훈수국장	제/부시장	시	장
5.23		24		전결		[Signature]	
협조자	등록계장	비서	계장	기획행정부	보	존	
시명	문서	계장	총무	계장	년 한		
기년	안월일	66. 5. 23	시행월일	66. 5. 27	검정	27	장서
분류기호	2547.4	- 3215		관	[Stamp]		
경수	유신	각 안		참 조	발 신		
공고제 87 호							
제	목	영업용 차량 임시 검사 실시					
<p>차량의 보안도 향상 및 더먼 씨-비스를 위한 장비의 개선과</p> <p>대형발산방저를 위하여 계속적인 장비강화책으로 교통부 장관으로 부터</p> <p>도로운송차량법 제 51조에 의거 시내 영업용 차량 (화물제외)에 대하여</p> <p>임시검사를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실시모져합니다.</p> <p>(신규버스·합승버스·택시·승합차)</p>							
1. 대상차량							
2. 시행기간							
가. 66. 6. 1. 현재 계속검사(신규검사 제외)를 받고 3개월이 경과되는 차량은 66. 6. 1.부터 66. 6. 30. 까지.							
나. 66. 6. 2.부터 66. 6. 30. 사이에 3개월이 경과되는 차량은 66. 7. 1.부터 66. 7. 9. 까지.							
다. 권 각항 이외의 차량은 3개월이 경과되는날부터 5일 이내.							

합
52
40

28
66. 5. 24

344 15-1

서울특별시 114

3. 검사 요령

계속검사와 동일한 요령으로 시행하되 특히 아태사항을 유의한다.

가. 맥언 발삼

나. 송자 장치(의자 및 손잡이)

다. 외부 도색

라. 각종 보안장치

4. 조치 사항

수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휴일에도 검사를 실시한다.

5. 실시 요령

가. 업무량의 편중 또는 혼송표율의 저하를 막기 위하여 수검 일자를 혼수입제별로 수집토록 한다 (별첨 참조)

나. 본 임시검사에 따른 유효기간 책정에 있어서는 최장 6개월의 범위내에서 차량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단축 조정한다.

다. 보도방법은 해당사업소에서 의뢰 게시 ~~한~~도록하고 공보실장에 의뢰 신문, 라디오에 보도하도록 한다. (별첨 참조)

6. 미 수집 차량조치

관할 본 검사를 기한내에 수집치 않음시는 도로혼송차량법 제 51조 2항에 따른 처벌규정에 의거 의법 조치한다.

한 2

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 시 장

제목 동 건



115

차량의 보안도양상 및 대민 서비스 ~~비밀유지~~ 장비의 개선과 매연방산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정비강화책으로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도로운송차량법 제 51조에 의거 시내 영업용 차량(화물제외)에 대하여 임시검사물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실시키로 되었으니 각 산하 조합원에게 주지시켜 본건 시행에 자결했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영업용 ~~버스~~ ^(일반버스·공용버스·관광버스) 합승, 택시, ~~공용버스~~

2. 시행기간

가. 66. 6. 1. 편제 계속검사(신규검사제외)를 받고 3개월이 경과되는 차량은 66. 6. 1.부터 66. 6. 30. 까지.

나. 66. 6. 2.부터 66. 6. 30. 까지 사이에 3개월이 경과되는 차량은 66. 7. 1.부터 66. 7. 9. 까지

다. 전 각항이외의 차량은 3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5일 이내.

3. 검사 요령

계속검사와 동일한 요령으로 시행하되 특히 아래사항에 유의한다.

가. 매연방산

나. 승차 장치 (의자 및 손잡이)

다. 외부 도색

라. 각종 보안장치

4. 조치 사항

수검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휴일에도 검사를 실시한다.

5. 실시 요령

가. 업무량의 편중 또는 혼송료율의 저하를 막기 위하여 수집입
자를 혼수입체법도 수집하도록 한다 (별첨 참조)

나. 본 임시검사에 따른 유효기간 책정에 있어서는 최장 6개
월의 범위내에서 차량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단축 조정한다.

다. 보기쉬운곳에 차 취지를 게시공고하도록할것 (별첨 참조)

6. 미수집차량 조치

만일 본 검사를 기한내에 수집치 않을시는 도로운송 차량법 제
51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처벌규정에 의거 의법조치한다.

유첨 1. 검사실시 요령 1부.

2. 게시 공고함 1부.

수신처

시내버스로합, 합승로합, 택시로합, 급행버스로합, 관광협회

안 >

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 시 장

제목 동 건

차량의 보안도향상 및 국민 서비스 를 위한 장비의 개선과 매연방
산방지를 위하여 계속적인 정비강화책으로 교통부 장관으로 부터 도로운송
차량법 제 51조에 의거 시내 영업용 차량(화물제외)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시
행하라는 지시가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실시키로 되었으니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검사예찰처를 기하기 바랍.

- 1. 대상차량 ^(일반버스·급행버스·관광버스) 영업용 버스, 합승, 택시·~~급행버스~~
- 2. 시정기간



가. 66. 6. 1. 현재 계속검사(집수검사제외)를 받고 3개월이 경과되는 차량은 66. 6. 1.부터 66. 6. 30. 까지.

나. 66. 6. 2.부터 66. 6. 30. 사이에 3개월이 경과되는 차량은 66. 7. 1.부터 66. 7. 5. 까지.

다. 전 각항이외의 차량은 3개월이 경과되는날부터 5일 이내.

3. 검사 요령

계속검사와 동일한요령으로 시행하되 특히 아래사항을유의한다.

가. 매연 발산

나. 승차 장치 (의자 및 손잡이)

다. 외부 도색

라. 각종 보안장치

4. 조치 사항

수검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휴일에도 검사를 실시한다.

5. 실시 요령

가. 업무량의 편중 또는 운송효율의 저하를 막기위하여 수검 일자를 운수업체별로 수검토록 한다 (별첨 참조)

나. 본 임시검사에 따른 유효기간 책정에 있어서는 최장 6개월의 범위내에서 차량의 상태에따라 적절히 단축 조정토록한다.

6. 본 실시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공휴일 근무자에게 적절한 수당을 지급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일수검으로 되어있는 차량은 근무시간외라 할지라도 이를 수검관으로토록 할 것이며.

7. 본 기간내에 수검하지 않은 차량은 기간만료 다음날 까지 피사련, 등특별로별로 차량과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첨 실시 요령 1부.

수신처

신진자동차 공업 주식회사, 한국화물 자동차 공업 주식회사, 제담법합
강철회장, 국제모터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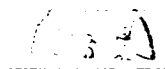
수신 공보실장

발신 과 장

제목 영업용 차량 임시검사 실시에 따른 보도의뢰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시내 영업용 차량 (화물자동차 제외)에 대한
임시검사를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어 이를 별첨 보도자료와 같이 실시키로 되
었으니 신문, 라디오에 널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첨 보도자료 1부. 끝



119

19-6



차량의 보안도 향상 및 대민 서비스를 위한 장비의 개선과 안전방산 방지를 위한 계속적인 정비강화책으로 도로운송차량법 제 51조 규정에 의거 시내 영업용차량 (화물자동차 제외)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키로 되었으니 대상차량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내에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일반버스·급행버스·관광버스) 영업용 버스, ~~합승, 택시, 금주버스~~

2. 시행기간

가. 66. 6. 1. 현재 계속검사 (신규검사 제외)를 받고 3개월이 경과되는 차량은 66. 6. 1.부터 66. 6. 30. 까지.

나. 66. 6. 2.부터 66. 6. 30. 사이에 3개월이 경과되는 차량은 66 7. 1.부터 66. 7. 5. 까지.

다. 전 각항이칙의 차량은 3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5일 이내.

3. 수집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휴일에도 실시함.

4. 만일 임시검사를 기한내에 수집치 않을시는 도로운송차량법 제 51조 2항에 따른 처벌규정에 의거 의법 조치를 받게됩니다.

5. 실시요령

계속검사와 동일한 요령으로 실시함.



서울특별시 **공고제 87호**
 시내 영업용차량 임시검사 실시

시내에서 운행중인 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검사를 실시키로 되었으니 기간내에 바깥출입이 수검하시기 바랍니다.

- 1. 대상차량 **영업용 버스** (일반버스·공공버스·관광버스) 합승, 택시·~~공용~~버스
- 2. 시행기간

가. 66. 6. 1. 현재 계속검사 (신규검사제외)를 받고 3개월이 경과되는 차량은 66. 6. 1.부터 66. 6. 30. 까지.

나. 66. 6.2.부터 66. 6. 30. 사이에 3개월이 경과되는 차량은 66. 7. 1.부터 66. 7. 5. 까지.

다. 전 각항이외의 차량은 3개월이 경과되는날부터 5일 이내.

3. 실시요령

계속검사와 동일한 요령으로 실시함.

4. 조치사항

수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휴일에도 검사를 실시함.

5. 만일 임시검사를 기간내에 수검치 않을시는 도로운송차량법 제 51조 2항에 따른 처벌규정에 의거 의법 조치를 받게됨.

1966. 5. 27.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수집일	수 집 내 역						
	6.1.	6.6.	6.11.	6.16.	6.21.	6.26.	7.1.
역사경	-6.5	-6.10	-6.15	-6.20	-6.25	-6.30	-7.5
완설여객	6	6	6	6	6	7	19
제설여객	8	8	8	8	8	8	20
정농	3	3	3	3	3		9
미장	3	3	3		3	2	9
안성	4	4	4	4	4	3	15
세관비소	1	1	1				9
장안여객	3	3	2	2	3	3	3
출신	3	4	4	4	3	3	15
한설고층	1	1	1	1	2	1	17
영진고층	4	4	3	3	3	3	
신정							
경남관할							18
신정	2	2	2	2	1		
대원고층	1	1	1	1	1		5
대설여객		4	4	4	4	4	
대동출입	1	1					
대경순수	2	2	3	3	3	3	9
삼선택시	1	1	1	1	1	1	10
삼미순수	2	2	3	3	3	2	44
합성	1	1	1	1			5

동학술수	1	1					7
어묵	2	2	2	2	1	1	19
말미술업	6	6	6	6	7	7	14
대참고용	2	2	2	1	1	2	15
대성술수	2	2	3	2	2	2	17
명주술수	1	1	2	2	2	2	10
남산택시	4	4	3	3	3	3	14
술업	2	2	2	2	2	2	17
삼주	3	3	3	3	3	3	9
대중술수							
한동술수	2	2	3	3	3	3	8
삼도술수	2	2	2	1	1	1	6
여성술수	1	1	1	1	1	2	8
동성	2	2	2	1	2	2	11
백성	1	1	1	1	1	2	7
남업택시							24
극동술수	1						7
건설자동차	3	3	3	2	2	2	46
중공합송	2	2	1	2	2	2	10
희성술수	1	1	2	2	2	1	16
삼주술수	5	5	5	5	4	4	24
수도술수	1	1					5

신진순수	1	1	2	2	2	1	10
심동택지	2	2	2	2	1	1	9
동림순수	2	2	2	2	2	3	14
국동택지	2	1	1	1	1	1	7
동국삼촌	2	2	2	2	2	2	9
서술고향	5	5	5	5	5	5	
북정순수	2	2	2	1	2	2	4
조양순수	3	3	4	3	3	3	17
동정순수	2	3	3	3	3	3	6
신정고향	1	1	1	2	2	2	2
연림순수	1	1	1	1	1	1	11
동보순수	2	2	2	2	2	2	12
서술택지	3	3	2	2	2	2	10
동도자동화	4	4	5	5	4	4	11
오성순수	2	3	2	2	2	2	2
한국택지	11	11	11	12	12	12	62
한일관공	5	5	6	6	6	6	25
서술여객	4	3	4	4	4	4	12
원로여객	3	3	2	2	2	2	3
국성여객	4	4	4	4	5	5	6
대도여객	2	2	2	2	2	1	8
서술승합	5	5	5	5	4	5	10

350

15-11

서울특별시 124

신공고용	3	3	3	3	4	3	19
한국고용	3	3	3	2	3	3	7
금모순수							
대형순수	2	2	3	2	2	2	9
중형순수	1			2			2
협대고용							
수출고용	3	3	4	3	3	3	
신선여객	1	1					4
상점			1	1	1		1
항남	1	1	1	1			2
국제항공				1	1	1	7
합승	1	1					
중형고용							1
정성자동차	2	3	3	2	2	2	14
한남여객	2	1	1	1	1	1	16
원전상운	2	2	2	2	2	1	5
금철순수	6	5	5	5	5	5	16
경심순수	3	3	3	3	3	3	10
동일택시	2	2	2	3	2	2	6
육왕고용							16
일진순수	3	3	3	2	2	2	10
대동택시	2	2	2	3	3	3	13

국산택시	2	2	1	1	1	1	5
한일은행	5	4	4	4	4	4	15
동작운수	2	2	1	1	1	1	5
원진상운	1	1	2	2	2	1	11
금성상운			1	1	1		5
은성택시	5	5	5	5	4	4	
대형운수							
덕목여객	1	1	1	1			3
우제여객시	4	4	4	4	4	4	1
우제야고운	2	2	2	1	1	1	5
국제관광 택시	9	10	10	10	10	10	
서울승합	12	12	12	11	11	11	30
동쪽여객	5	5	5	5	4	4	
덕목고운	9	9	9	9	9	8	16
삼양여객	1	1	1	1	2	1	19
·	4	5	5	5	5	5	
동일여객	5	5	5	5	5	5	
수도관광	1	1	1	2	1	1	6
한국관광	2	2	2	1	1	1	16
신촌고운	7	7	6	7	7	7	14
삼일운수	1	1	1	1			5
강남여객	5	5	5	5	5	5	2

제일석재			1	1	1	1	3
광성석재	1	1	1	1	1		2
금강석재	1	1	2	2	2	2	2
일동석재	1	1	1	1	1		3
은마교량							2
경기석재	1	2	1	1	1	1	3
일동포함수	2	2	2	2	2	2	47
국영물산	2	2	1	1	1	1	13
신촌순수	1	1	1	1			31
대진순수	1	1	1	2	2	2	16
경향순수	1	1	1	1			6
덕수순수	2	2	2	2	3	3	8
상마	1	1	1	1	1		3
신촌택사	4	4	4	4	3	4	10
일동포	3	3	3	4	4	4	22
대동	1	1	1	1	1	2	18
신용	4	4	4	4	3	3	21
신협	7	8	8	8	8	8	
정크기철	7	7	7	7	6	6	
국적순수	11	11	11	11	12	11	30
평안순수	3	3	3	4	3	3	16
태양순수	5	5	4	4	3	3	

광복순수	5	5	5	5	5	5	19
대보순수	7	7	7	7	7	7	27
덕수순수	5	5	5	4	4	4	40
동심택시	11	12	12	12	12	12	21
제일고용	4	4	4	4	4	4	27
조향순수	2	3	3	3	3	3	15
	365	369	370	362	362	368	1528
6.1~6.30	2,176원		19平均 1檢査場約 18元				
7.1~7.7	1,528원		1日平均 1檢査場約 22元				
7.5~8.5	2,288원		1日平均 1檢査場約 19元				